

의안번호	2206832
의 퇴 인	오세희의원
회 답 일	2025. 1. 9.
추계번호	24C6332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8조의3	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해당 특별관리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0항 신설)	재량규정
	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·보급하여 이를 특별관리지역의 지정·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(제11항 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8조의3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특별관리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(안 제48조의3)
 - 개정안(안 제48조의3제10항)과 같이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의3제6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해당 특별관리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¹⁾

- 다만, 2024년 12월말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종로구 한 곳으로서, 현시점에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지역과 그에 따른 지원기준 및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한편, 개정안(안 제48조의3제11항)과 같이 특별관리지역의 지정·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·보급을 의무화하는 경우 지표개발 연구용역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예상할 수 있으나, 문체부 문의 결과 ‘관광의 지속가능성’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바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수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1)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3(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)

⑥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, 편의시설 설치, 이용수칙 고지, 이용료 징수, 차량·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